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6. 6. 2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제정(제안) 이유

- 2005. 1. 30개정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고자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안 제4조 내지 10조)

- 구 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위원 :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 기 능
 -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육비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
- 임 기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안제11조내지 제15조)

-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함.
-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음.

○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제16조내지 제24조)

- 위탁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함
- 기존수탁자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 심사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안제25조내지 제26조)

- 구 성: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 인사등 5인 이상
- 기 능
 -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안제27조내지 제28조)**

-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사회복지시설과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음.

○ **기타 보조금 지급 등 (안제29조)**

관 련 법 규

- 영유아보육법 · 같은법시행령 · 같은법시행규칙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및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초구 등

검 토 의 건

- 본 조례안은 2005.1.30 개정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고자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제4조내지 제10조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 위원의 구성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 하는자와 관계공무원으로 하며,
 - 기능은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료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안제11조내지 제15조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기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이며,

- 안제16조내지 제24조는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1개동에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한 수요가 있는 경우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을 위탁할 경우 3년으로 하되 공개방법으로 하며 재위탁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으며,
 - 위탁기간중 수탁자가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와 수탁자의 의무위반 등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제27조내지 제28조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영유아 보육법 제27조 및 여성발전 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육시설 이용대상 확대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차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대부분이며, 상위법령과 상충되어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 6. 22

보고자 : 이 남 식